



2021년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2021. 08. 30.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2021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2021년 08월 30일(월) 개회 16시00분, 산회 17시0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대회의실

의사일정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안)

부의된 안건	의결상황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안)	원안 의결 (전원 찬성)

□ 재정위원회 임시회 상세회의내용

○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내용 및 결과

일시	2021. 08. 30.(월) 16:00~17:00	장소	본관 6층 대회의실
참석자 현황		재적위원 15명 중 11명 참석	
<성원 보고> ○ 위원장: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천병광 과장(간사): 재적위원 15분 중 11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림. <개회 선언> <재정 위원 소개> ○ 위원장: 지난 8월 13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으로 함석동 사무국장님이 임명되어 재정위원회 신임 위원이 됨. ○ 위원들 인사말씀 <전회 회의결과 보고> ○ 재무팀장 진기정: 2021.4.30.에 개최된 재정위원회 제1회 임시회 결과를 보고 하겠음. 심의 안건은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안이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 대로 통과됨. <안건 상정> ○ 위원장: 2021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안건으로 2021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안 상정함.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 기타 안건의 심의 절차에 의거 금회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설명 하겠음. ○ 교무팀장 강태구: <배부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은 손을 들면 발언권을 드리겠음. ○ 나운미 위원: 회의자료 74페이지 「금오공대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비 집행할 때 적용하던 규정임. 연구비가 수당적 성격으로 선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면 중앙 관리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교무팀장 강태구: 교연비는 수당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성격임. 연구비 계획·관리는 교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교연비에 포함되어 15억 증액된 교내 연구비의 실적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나운미 위원: 현재 연구비는 인건비, 수당, 재료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변경 후에는 연구 실적에 따른 실적급으로 40%, 40%, 20%씩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 증빙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지원팀장 오길선: 연구 과제가 선정되면 40% 선지급하고 연구 결과물 제출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이후 2년 내 학회지 미게재 시 전액 환수하게 되는 구조임.
- 최성대 위원
 - 연구비라고 하면 인건비, 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지금 계획안은 연구비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실적물 하나만 제출하고 돈을 가져다 쓰라고 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없음. 규정이 이전 운영 방식에 맞춰져 있으므로 바뀐 시스템대로 규정도 바뀌어야 함.
 - 교내 과제로 교연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38%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교원도 있는데, 연구 결과가 미진하여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게 되면 세금까지 다 부담해야 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냈어야 하지 않은가? 다른 학교도 이미 시행 중이니 타학교 사례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인건비에 대한 규정 없이 연구비로 받은 일부를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로 줘야 하는 부분이 교원들의 가장 큰 고민임.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구성원들이 갖는 궁금한 사항을 보완하여 집행되었으면 함. 실무 부서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행해야 함.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위원들의 찬반으로 결정하고자 함.
- 최성대 위원: 규정에 대한 논의 없이 계획안에 대해 승인하고 넘어가면 미비한 부분을 바꿀 수가 없음.
- 나윤미 위원: 재정위원회 이므로 예산만 심의하고 규정은 참고자료임.
- 최성대 위원: 이 규정대로 예산을 사용하고자 규정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예산 자체만 승인하라면 승인할 수 있지만, 이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 이는 같이 검토 해야 함.
- 위원장: 안전에 상정된 15억원 증액 관련 계획안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별 예산 배분에 대한 내용이고, 집행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나 지침은 실무부서에서 보완해서 집행하는 것임.
- 정인희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학술경비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 의견 수렴 후 교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추가로 수정이 필요하면 의견을 내서 산학협력단에서 수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연구지원팀장 오길선: 의견 수렴시 기존 방식보다 바뀐 방식이 오히려 연구

활동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음. 그에 반해 연구과제가 많은 교원 중 일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원장: 계획안을 보면 전체 연구비를 수당처럼 받은 후, 연구 재료 구매 등 집행시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인희 위원: 교육부 교연비 지급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보완하고자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교연비는 수당이 아니라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므로 연구비일 때와 비용 명목일 때에 따라 과세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람.
- 최성대 위원: 교연비 지급 후 환수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받은 금액 전액 환수해서는 안됨.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이라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수정해야 함. 전액 환수 한다면 이미 세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없지 않은가?
- 나운미 위원: 전액 환수 상황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년 내 수정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개인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연구지원팀장 오길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세법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 위원장: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교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민감한 사항이고 전국 국립대가 대상이므로 최성대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학교 사례라든지, 환급 절차 등을 산학협력단에서 준비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 연구지원팀장 오길선: 환수할 경우 세금문제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위원장: 논의된 안전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으신지? 2021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찬성에 의해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간서인 호명>

- 최성대 위원, 노정석 위원, 배일 위원 3명 간서인 호명

<폐회선포>

□ 위원 참석부

2021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위원 서명부

2021. 08. 30.(월)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기 계 공 학 과	위 원 장	윤 성 호	윤성호	
2	교 수 회	교수회부회장	최 성 대	최성대	
3	교 무 처	교무처장	권 현 규	권현규	
4	학 생 처	학생처장	김 우 석	-	
5	기 획 협 력 처	기획협력처장	정 인 회	정인회	
6	사 무 국	사무국장	함 석 동	함석동	
7	학 생 처	학생과장	남 상 규	남상규	
8	전 자 공 학 부	교 수	이 영 훈	-	
9	경 영 학 과	교 수	김 진 한	-	
10	산 학 협 력 단	행 정 주 사	나 윤 미	나윤미	
11	시 설 안 전 과	시 설 주 사	노 정 석	노정석	
12	전 자 공 학 부	총 학 생 회 장	이 현 수	이현수	
13	소 재 디 자 인 공 학 전 공	총 부 학 생 회 장	김 성 훈	-	
14	총 동 창 회	사 무 국 장	용 대 순	용대순	
15	동 아 회 계 법 인	회 계 사	배 일	배일	
간사	사 무 국	총 무 과 장	천 병 광	천병광	